

[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]

검 토 보 고

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

○ 제 출 일 : 2003. 12. 1.

○ 제 출 자 : 거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03. 12. 1.

다. 의안번호 : 제 2003 - 63 호

2.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

가. 개정이유

○ 2004년도 공기업 전환에 따라 원인자 부담 원리를 도입하고, 독립채산 기반을 조성하여야 하는바,

○ 그동안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하수도 사용요금을 현실화 하여 하수도사업의 재정적자를 해소코자함.

나. 주요골자

○ 배수설비 공사비는 선납해야 하나,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(안 제3조)

○ 하수도 사용료를 일률적으로 25% 인상함 (안 제11조 제2항 별표1)

○ 공공하수도 점용시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15조 제5항)

-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지역 일간지에 공고하고, 원인자부담금의 고지 및 징수방법을 규칙으로 정함
(안 제16조 제3항, 제4항)

- 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 : 별표 5

3. 검토의견

하수도 사용료 인상비교표

(단위 : 톤, 원, %)

업종별	현행		개정		인상율		타시군	
	사용량	요금	사용량	요금	금액(원)	비율(%)	창녕	마산
가정용	0~10	68	1~20	94	26	35	108	144
	11~20	80						
	21~30	92	21~30	125	33	36	165	181
	31~40	104						
	41~50	118	31이상	167	50	30	231	181
	51이상	130						
업무용	0~20	78	1~30	110	32	37	단일	163
	21~50	98	31~50	139	41	42		163
	51~100	120	51~100	169	49	41	구간 154원	163
	101~300	144	101~300	195	51	35		234
	301이상	168	301이상	242	74	44	267	
영업용	0~30	120	1~30	110	△10	△8	220	173
	31~50	142	31~50	139	△3	△2	270	173
	51~100	163	51~100	169	6	4	319	244
	101~500	185	101~300	195	10	5	363	276
	501이상	206	301이상	242	36	19	396	276
욕탕2종	0~200	169	1~30	110	△59	△35		
	201~300	199	31~50	139	△30	△15		
	301~500	229	51~100	169	0	0		
	501이상	260	101~300	195	△4	△2		
			301이상	242	13	6		
욕탕1종	0~200	96	1~200	120	24	25	대중 탕용	천톤미만 162원
	201~300	113	201~300	147	16	14		192원 천톤이상 183원
	301~500	130	301~500	172	42	32		
	501이상	148	501이상	200	52	35		
산업용	1톤당	72	1톤당	109	37	51		

- 평균적으로 25% 인상하였다 하나 현실화율은 불과 30%임.
- 가정용은 30~35%정도 인상된 반면 영업용은 3~10%, 옥탕2종은 4~59% 감소한 경우도 있음.
- 본 조례안은 제102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쳐 수정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써 체제나 형식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.

4. 참 고

- 2003년도 지방상·하수도 사업 추진지침(행정자치부)
- 상수도요금 인상을 위한 거창군 소비정책 심의회 심의(2003. 5. 30)